

9.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연차보고서

9-1.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

1) 보상위원회의 구성

(2014년 3월 5일 현재)

성명	직명	사외이사 여부	주요경력	비고
태응렬	사외이사	○	·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장 ·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	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
손성규	사외이사	○	·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· 연세대학교 교수	
김태기	사외이사	○	· IBK투자증권 사외이사 · 단국대학교 교수	
유경준	사외이사	○	·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· KDI 선임연구위원	리스크관리위원
이대우	사외이사	○	· 한국수출입은행 감사 · 우리자산운용 부사장	
양경석	사외이사	○	·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· 국가발전연구원 연구위원	리스크관리위원
정찬형	기타 비상무이사	X	·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장 ·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관리부장	

2) 보상위원회의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

- 평가보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함

3) 보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

- 이사보수한도액 결의
- 이사·이사대우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기준 결의
- 이사·이사대우의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시기 결의

4) 보상위원회의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점검 대상자 범위

분류	인원수	비고
경영진	11명	대표이사 1명, 상근감사위원 1명, 전무이사 2명, 전무대우 1명, 상무대우 5명, 준법감시인 1명
특정직원	-	해당사항 없음

5) 보상위원회의 개최횟수 등

개최횟수	개최일
3회	2013.6.11, 2013.7.26, 2013.12.11

6)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

- 주요 변경사항 없음

7) 리스크관리·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

- 리스크관리 부서는 대상자가 없으며, 준법감시 부서는 별도의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상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는 조직과 분리 운영되고 있음

9-2. 보상체계 주요 특성

1)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

- 매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평가
- 계량지표(70%)와 비계량지표(30%) 평가

2)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

- 이사는 회사전체 실적평가를 위한 공동지표로 평가하고, 이사대우는 공동지표 이외에 담당업무별 개별지표로 평가

3)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

-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지급률의 40%~60%를 평가대상연도 다음연도에 평가·지급하고, 이연성과급은 3년 이후 별도평가 결과에

따라 확정·지급함

4)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 기준 등

- 전액 현금보상임

9-3. 보상에 관한 총계정보

1) 회계연도중 보상액(발생액 기준)

(단위 : 명, 억원)

구 분	수급자수 ^{주1)}	고정보상액	변동보상액	
			_{-주2)}	이연지급금액 ^{주3)}
2013년	경영진	11	10	-
	특정직원	-	-	-
2012년	경영진	9	12	7
	특정직원	-	-	-

- 주) 1. 당해 회계연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영진 기준
 2. 2013년 변동보상액 미확정
 3. 이연보상은 3년 후 별도 평가 후 지급
 4.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.4.1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(3월31일→12월31일) 됨에 따라, 2013 회계연도는 '13.4~12월(9개월), 2012 회계연도는 '12.4~'13.3월(12개월) 실적으로 대상기간이 상이합니다. 자료 활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금액구간별 분포

(단위 : 명, 억원)

구 분	금액구분 (개인별 당해연도 총보상액)	수급자수	고정보상액	변동보상액
2013년	~3억원 미만	11	10	_{-주)}
	3억원 이상~5억원 미만	-	-	-
	5억원 이상~7억원 미만	-	-	-
	7억원 이상~10억원 미만	-	-	-
	10억원 이상~15억원 미만	-	-	-
	15억원 이상~20억원 미만	-	-	-
	20억원 이상~	-	-	-

주) 2013년 변동보상액 미확정

2) 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(발생액 기준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변동보상액					
		장기성과 연동상품				현금	기타
		계	주식	주식 연계상품 등			
2013년	경영진	- ^{주)}	-	-	-	-	-
	특정직원	-	-	-	-	-	-
2012년	경영진	7	-	-	-	7	-
	특정직원	-	-	-	-	-	-

주) 1. 2013년 변동보상액 미확정

2.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.4.1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(3월31일→12월31일) 됨에 따라, 2013 회계연도는 '13.4~12월(9개월), 2012 회계연도는 '12.4~'13.3월(12개월) 실적으로 대상기간이 상이합니다. 자료 활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3) 이연된 보상액(누적액 기준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이연보상액		
		지급확정	지급미확정	
2013년	경영진	7	-	7
	특정직원	-	-	-
2012년	경영진	6	6	-
	특정직원	-	-	-

주)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.4.1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(3월31일→12월31일) 됨에 따라, 2013 회계연도는 '13.4~12월(9개월), 2012 회계연도는 '12.4~'13.3월(12개월) 실적으로 대상기간이 상이합니다. 자료 활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4) 이연된 보상액증 당해연도 지급액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직전회계연도말 이연보상액	직전회계연도말 당해회계연도 지급예정액(A)	당해회계연도 지급액(B)	증감액 (A-B)	증감 사유
2013년	경영진	6	6	6	0	-
	특정직원	-	-	-	-	-
2012년	경영진	-	-	-	-	-
	특정직원	-	-	-	-	-

주)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.4.1부터 보험회사 장부폐쇄일이 변경(3월31일→12월31일) 됨에 따라, 2013 회계연도는 '13.4~12월(9개월), 2012 회계연도는 '12.4~'13.3월(12개월) 실적으로 대상기간이 상이합니다. 자료 활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5)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

- 해당사항 없음

6)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

- 해당사항 없음

7)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

- 해당사항 없음